



학 칙

제정일	1979. 3. 1
개정일	2022. 5. 1
개정차수	70차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대학교는 “동서울대학교” 라 한다. (개정 2011.11.20)

제 3조 (위치) 본 대학교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에 둔다. (개정 2012. 7.22)

제 4조 (설치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전문학사 학위과정) 본 대학교 학부 및 학과(이하 “학부(과)” 라 한다.)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입학하는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2.27, 2015. 2.24, 2016. 2.24, 2016. 6.20, 2017. 8.28, 2018.12. 5, 2020. 3. 1, 2020. 8.31, 2021. 8. 1, 2022. 5. 1)

학부(과)	입 학 정 원			학부(과)	입 학 정 원		
	주 간	야 간	계		주 간	야 간	계
항공기계과	70	-	70	사회복지학과	60	-	60
미래자동차학과	70	-	70	항공서비스학과	80	-	80
전기공학과	70	-	70	중국비즈니스과	30	-	30
전자공학과	70	-	70	레저스포츠학과	70	-	70
컴퓨터통신과	60	-	60	경호스포츠과	40	-	40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95	-	95	산업디자인학과	70	-	70
건축학과	90	-	90	시각디자인학과			
컴퓨터정보과	60	-	60	- 시각디자인전공	60	-	60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100	-	100	- 시각영상디자인전공	30	-	30
실내디자인학과	73	-	73	패션디자인학과	60	-	60
럭셔리위치주얼리학과	30	-	30	뷰티코디네이션과	96	-	96
게임콘텐츠과	80	-	80	연기예술학과			
자유전공학과	40	-	40	- 연극전공	35	-	35
호텔외식조리과				- 뮤지컬전공	35	-	35
- 호텔외식조리전공	70	-	70	- 방송연예전공	35	-	35
- 카페베이커리전공	70	-	70	실용음악학과	60	-	60
보건의료행정과	40	-	40	콘텐츠크리에이터과	70	-	70
세무회계과	60	-	60	엔터테인먼트경영과	40	-	40
마케팅과	40	-	40	K-POP과	40	-	4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0	-	40	메타버스게임디자인과	40	-	40
호텔관광경영학과	40	-	40	무대미술과	30	-	30
아동보육과	40	-	40	입학정원 총계	2,289	-	2,289

제 4조의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본 대학교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실무중심 심화교육 실시를 위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사학위과정”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학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16, 2016. 2.24, 2016. 6.20, 2017. 2.28, 2017. 8.28, 2018.

2.28, 2018.12. 5, 2020. 3. 1, 2021. 3. 2, 2022. 3. 1)

학 과	입학정원		
	산업체 경력이 없는 학사학위 과정		
	주간	야간	계
기계자동차공학과의	15명	-	15명
전기정보제어학과	-	20명	20명
전자공학과	-	20명	20명
ICT융합학과	-	15명	15명
ICT보안학과	-	15명	15명
건축학과	25명	-	25명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15명	-	15명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35명	-	35명
실내디자인학과	20명	-	20명
럭셔리위치주얼리학과	-	15명	15명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20명	20명
호텔관광외식학과	15명	-	15명
사회복지학과	20명	-	20명
항공서비스학과	15명	-	15명
레저스포츠학과	-	20명	20명
산업디자인학과	-	20명	20명
시각디자인학과	-	20명	20명
패션디자인학과	15명	-	15명
연기예술학과	20명	-	20명
실용음악학과	20명	-	20명
계	215명	165명	380명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 5조 (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 2.27)

1. 수업연한 2년제 학부(과) : 항공기계과, 미래자동차학과, 럭셔리위치주얼리학과, 게임콘텐츠과, 자유전공학과, 호텔외식조리과, 세무회계과, 마케팅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중국비즈니스과, 레저스포츠학과, 경호스포츠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뷰티코디네이션과, 콘텐츠크리에이터과,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메타버스게임디자인과, 무대미술과 (개정 2015. 2.24, 2016. 6.20, 2018.12. 5, 2020. 3. 1, 2020. 8.31, 2021. 8. 1, 2022. 5. 1)

2. 수업연한 3년제 학부(과) :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통신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건축학과, 컴퓨터정보과,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실내디자인학과, 보건의료행정과, 아동보육과, 사회복지학과, 연기예술학과, 실용음악학과, K-POP과 (개정 2015. 2.24, 2016. 6.20, 2017. 8.28, 2018.12. 5, 2020. 3. 1, 2020. 8.31, 2021. 8. 1, 2022. 5. 1)

②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 3년제 졸업자는 1년 이상, 2년제 졸업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1. 수업연한 1년제 학과 : 전기정보제어학과, 전자공학과, ICT융합학과, ICT보안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건축학과,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연기예술학과, 실용음악학과 (개정 2016. 2.24, 2018. 2.28, 2018.12. 5, 2020. 3. 1)

2. 수업연한 2년제 학과 : 기계자동차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럭셔리위치주얼리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호텔관광외식학과, 사회복지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개정 2014. 6.16, 2016. 6.20, 2017. 2.28, 2017. 8.28, 2018. 2.28, 2018.12. 5, 2020. 3. 1, 2021. 3. 2, 2022. 3. 1)

제 6조 (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삭제 1999. 5. 1)

제 3 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7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조 (학기 및 학기개시일) 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0. 8.31, 2021. 3. 2)

② 감염병 등에 따른 위기단계 발생 또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등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기개시일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전후 또는 9월 1일 전후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 2021. 3. 2)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수업, 실습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3. 2)

[제목개정 2021. 3. 2]

제 9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2.26)

③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적 재난 등 위기단계 발생 시 수업일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31)

제10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3. 1)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10월 2일)

②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3. 1)

③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3. 1)

제10조의 2 (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2.26)

제 4 장 입 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 (입학시기) 신 입학은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2. 3. 1)

제12조 (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와 산업체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7.22)

제13조 (입학지원) ① 입학지원 및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신입생 모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선발한다.

1. 본 대학교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
2. 공정한 선발 절차에 따른 인재 선발
3.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선발

[전문개정 2014. 6.16]

제14조 (입학전형) ① 신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 3. 1) (1-6호 삭제 2002. 3. 1)

② (삭제 2002. 3. 1)

③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8. 3. 1)

제14조의 2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 3. 1)

②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임무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6.16)

제14조의 3 (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 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 3. 1)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임무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6.16)

제14조의 4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① 학사학위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50% 이상은 산업체 인사로 한다. (개정 2020. 8.31, 2021. 8. 1)

③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3. 1]

제14조의 5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등)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입학홍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5. 3.31. 개정 2021. 8. 1)

제15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 6.16)

제15조의 2 (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1)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16조 (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1학년 이상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 2019. 3. 1)

② 편입학은 각 학부(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단, 3학년 편입학의 경우 전적 교에서 이수한 학부(과)와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9. 2.26, 2020. 8.31)

③ 편입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3. 1)

제16조의 2 (전과 및 전공변경) ① 교내 전과 및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단,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6.16, 개정 2018. 2.28)

1. 동일 학년제로의 전과 : 2년제 학과(전공)의 경우 1학년 2학기가 개시될 때, 3년제 학과(전공)의 경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가 개시될 때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2.28)
2. 2년제 학과(전공)에서 3년제 학과(전공)로의 전과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가 개시될 때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2.28)
3. 3년제 학과(전공)에서 2년제 학과(전공)로의 전과 : 1학년 2학기가 개시될 때에 직전학기 성적 2.50 미만자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2.28)

② 학부(과)별 전과는 전입학부(과) 기준으로 입학 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1)

③ 학부(과)별 전출은 전출학부(과) 기준으로 입학 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1)

④ 전과한 자는 전입한 학부(과)의 필수 교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개정 2009. 2.26)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1)

1.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
2. (삭제 2006. 3. 1)
3. (삭제 2018. 2.28)
4. 학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 단, 복학 시 해당 과정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

제17조 (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 또는 졸업이 취소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 제1항(징계) 중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학부(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27, 2015. 2.24, 2020. 8.31)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부(과)에 한한다. (개정 2004. 3. 1)

③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재입학은 입학당시의 자격요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

④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써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의 경우에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3. 1)

제18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9조 (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4. 8.25, 2016. 8.29)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의료인(한의사 포함)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허가하며, 휴학기간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법적조치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4. 8.25, 2016. 6.20, 2016. 8.29)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학기 개시일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

제19조의 2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개시일로부터 4분의 1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4. 8.25)

[본조신설 2004. 3. 1]

제20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3. 1)

제21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3. 2.27)

1.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2. 3. 1)

2. 무계출결석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한 자

3. (삭제 2020. 8.31)

4. (삭제 2002. 3. 1)

5. 타교에 입학한 자

6. 매학기 총장이 정한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2. 3. 1)

제 6 장 교과 및 수업

제22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교양교과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갖

추어야 할 최소한의 일반적 교과목으로 하며 전문교과의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 5)

②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교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현장실습학기제(단기)는 전문 교과에 포함하여 편성한다. (개정 2004. 3. 1, 2018.12. 5, 2022. 3. 1)

④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전공분야별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

⑤ 전문교과로 현장실습학기제(장기) 과정 및 현장실습학기제(해외)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2. 24, 2016. 8.29, 2022. 3. 1)

⑥ 교육과정은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08. 3. 1, 2019. 3. 1)

⑦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역량 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개편)/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2.24, 개정 2019. 3. 1, 2020. 8.31)

⑧ 역량 기반 교육품질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하여 직무역량 및 핵심역량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2.24, 개정 2019. 3. 1, 2020. 8.31)

⑨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역량 및 핵심역량 성취도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신설 2016. 2.24, 개정 2019. 3. 1, 2020. 8.31)

⑩ 제22조 제5항의 현장실습학기제(장기) 교육과정외에 조기취업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22., 개정 2022. 3. 1)

제22조의 2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계고등학교, 대학(교),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2.26)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 3. 1)

③ 교육과정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2. 3. 1)

제22조의 3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해당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교수는 교무처에 해당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3. 1, 개정 2021. 8. 1)

[본조신설 2002. 3. 1]

제22조의 4 (공학기술교육인증) ① 공학기술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학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학기술교육인증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학기술교육인증학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16]

제22조의 5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① 사회맞춤형 교육 수요자인 산업체로부터 요구 받은 직무분야 및 교육과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해당 산업체에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 산업체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

③ 사회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수강신청, 교과이수단위, 수업, 교외수업, 계절수업, 평가시험, 성적, 학점인정, 집중이수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3. 1, 2020. 3. 1)

[본조신설 2017. 2.28]

제22조의 6 (원격수업) ①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3. 2)

③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한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 강좌의 출석 및 결석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감염병 등에 따른 위기단계 발생 또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전체 수업을 학기단위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31)

[본조신설 2019. 3. 1]

제22조의 7 (선도형 창의 융·복합 트랙제 교육과정) ① 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선도형 창의 융·복합 트랙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과간 및 교과간 트랙제를 정규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

② (삭제 2020. 3. 1)

③ 일반 학과의 경우에는 학과간 상호 융·복합 교과목을 개설하고 팀티칭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

④ 학과간 및 교과간 트랙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3. 1)

[본조신설 2019. 3. 1, 제목개정 2020. 3. 1]

제22조의 8 (계약학과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 52조,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규정” 「계약학과 설립·운영(교육부 고시)」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며 개설학과 명칭, 정원, 수업연한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

제22조의 9 (융합전공 교육과정) ① 학사제도 개편을 통해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융합전공 교과목을 개설하고 팀티칭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융합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수기준에 따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융합전공 교육과정, 복수전공,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

제23조 (비정규 학습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학습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부(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04. 3. 1)

③ 비정규 학습과정의 교과이수는 학점단위로 하고, 본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정규과정의 해당계열 또는 학부(과)의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인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

④ 본 대학교에서 설치 운영되는 비정규 학습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 등록과정

2. 전공심화과정

3. 평생교육과정

4. 특별과정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과정

⑤ 비정규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2 (시간제 등록생 운영) ① 본 대학교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되 다른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정규과정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단, 교원양성과 관련된 학과는 선발할 수 없다.

④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⑤ 시간제 등록생의 학기당 신청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하되,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의 교과목은 정규과정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개설하며,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한다.

⑦ 기타 시간제 등록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26]

제23조의 3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생 등에게 전공분야의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산업현장 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8.31)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졸업 또는 학력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은 관련 학부(과)의 입학정원내, 총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비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비학위과정으로 한다.

⑤ 기타 비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

제23조의 4 (평생교육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서는 열린 교육을 통한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과정별로 정한다.

③ 특별과정은 평생교육과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④ 기타 평생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5 (학점은행제)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중 본 대학교에서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

②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인정신청 등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삭제 2002. 3. 1)

④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적용의 배제)를 제외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신설 2016. 6.20)

제23조의 6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1)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15학점 이상, 전공 45학점 이상, 총 8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단, 3년제는 교양 21학점 이상, 전공 54학점 이상, 총120학점 이상)
3. 본 대학교에서 48학점 이상 인 자(단, 3년제는 65학점 이상 인 자) (개정 2006. 3. 1)
 - ②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신설 2003. 3. 1)
 -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22)

제23조의 7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① 제23조 6의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별지 4호의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 7.22)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 3. 1)

제23조의 8 (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5. 3. 1)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 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년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제22조 제5항의 현장실습학기제(장기) 교육과정외에 조기취업이 확정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6.11.22., 2022. 3. 1)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고, 세부 졸업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2.27)

1. 2년제 학부(과) : 74학점 이상 (개정 2018.12. 5)

2. 3년제 학부(과) : 110학점 이상 (개정 2009. 2.26, 2018.12. 5)

3. 학사학위과정 1년제 학과 : 20학점 이상

4. 학사학위과정 2년제 학과 : 60학점 이상

다만,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 2014. 2.26, 2018.12. 5)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학사학위과정은 6학점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학사학위과정은 1년제 14학점, 2년제 18학점)을 초과 수강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학사학위과정은 6학점 미만) 및 최대 수강 학점에서 3학점을 추가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 2018.12. 5, 2019. 3. 1)

④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별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계절수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습학기제(단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8. 9. 1, 2020. 8.31, 2022. 3. 1)

⑤ 제22조 제3항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단기)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고, 제22조 제5항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장기) 학점은 18학점으로 하되, 현장실습학기제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3. 1, 2016. 8.29, 2022. 3. 1)

⑥ 정원의 특별전형(전문대학이상 졸업자)으로 입학한 자의 교양과목 성적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

제25조 (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학기제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7.22, 2022. 3. 1)

② 매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그 학기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3. 1)

③ 수업시간은 08:00부터 22:3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학기제 수업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7.22, 2022. 3. 1)

제25조의 2 (집중이수제) 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실습학기 등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 3. 1, 개정 2020. 3. 1)

③ 기타 집중이수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2. 3. 1, 개정 2020. 3. 1)

[제목개정 2020. 3. 1]

제25조의 3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전임교원의 책임 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2. 3. 1)

②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부(과)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다만, 부설기관 및 타기관의 강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 3. 1)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 (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객관식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3. 1)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현장실습학기제(장기)·조기취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6.11.22., 2022. 3. 1)

③ 학부(과)의 특성에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

④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역량 기반 직무역량평가 및 핵심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직무역량평가 및 핵심역량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2.24, 개정 2020. 3. 1, 2020. 8.31)

제27조 (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상대평가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현장실습학기제(장기)·조기취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22. 3. 1)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이를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o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P를 급제로 한다. 단, P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2. 3. 1, 개정 2022. 3. 1)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4.5	C0	2.0
A0	4.0	D+	1.5
B+	3.5	D0	1.0
B0	3.0	F	0
C+	2.5	P	불계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02. 3. 1)

⑤ 성적의 분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25)

⑥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성적 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24, 개정 2020. 3. 1. 2020. 8.31)

제27조의 2 (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31)

② 국고지원으로 본 대학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과목의 내용을 검토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8.24)

③ 조기 취업자는 출석인정 및 시험을 통해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22., 개정 2018.12. 5)

④ 학생선수 및 예·체능 특기자 학업기준에 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침 및 기준을 적용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제도적 환경과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선수 및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3. 1)

⑤ 국내·외 대학간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체결에 따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

⑥ 고등학교, 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과 직장생활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학습경험 인정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단,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은 학과 또는 전공별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 및 학습, 훈련, 경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3. 1)

⑦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 학습역량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할 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 개정 2020. 8.31)

⑧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2.3.1, 개정 2016.11.22)

제27조의 3 (군복무중의 학점인정) ① 군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군 복무 중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본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에 한한다.

② 군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습경험 인정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0. 8.31)

③ 제1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2. 23)

[전문개정 2009. 2.26]

제27조의 4 (학점인정심의위원회) ① 학점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16]

제27조의 5 (창업관련 학점인정) ①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창업학점을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창업학점 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창업강좌에 한한다.

② 창업관련 활동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창업관련 학점인정 심의는 제27조의 4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창업관련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8.25]

제28조 (삭제 1999. 5. 1)

제29조 (성적의 정정 및 취소) ①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정정 및 취소할 수 있다.

② 성적 정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2.26)

[전문개정 2013. 2.27]

제30조 (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 1, 2호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1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며, 1997학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3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2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37학점 이상 (개정 2018.12. 5)

2. 2학년 수료 : 74학점 이상 (개정 2018.12. 5)

3. 3학년수료 : 110학점 이상 (신설 2002. 3. 1, 개정 2018.12. 5)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특별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2. 3. 1)

⑤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 3,4호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5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08. 3. 1)

⑥ 학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2-1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3. 2.27)

1. 1학년 수료 : 1년제는 20학점 이상, 2년제는 30학점 이상 (개정 2018.12. 5)

2. 2학년 수료 : 60학점 이상 (개정 2018.12. 5)

⑦ 기 부여된 학점의 취소로 인하여 졸업당시 학년도 졸업사정 기준에 미달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가 수여되었을 경우 학부(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졸업 및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3. 2.27, 개정 2015. 2.24)

⑧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 중 제22조의4에 따른 공학기술교육인증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1, 별표2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4. 6.16)

⑨ 외국인 유학생 모집전형으로 입학한 유학생 중 입학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졸업이전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설 2016. 6.20)

제32조 (삭제 1999. 5. 1)

제 8 장 학 생 활 동

제33조 (학생회)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생회 회원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하되 휴학 중이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와 제적, 퇴학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2. 3. 1)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34조 (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 (학생회 이외의 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임의의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학생활동의 금지사항) ① 학생회 회원은 학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2. 3. 1)

② 학생회 회원은 학생자치활동 본연의 성격을 넘어 학교 운영에 간여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학업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3. 1)

③ 본 대학교의 학생회 회원이 아닌 자와 연대하여 학내에서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 (개정 2002. 3. 1)

제37조 (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및 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임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

② 학생회 및 학생들의 건전한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4. 3. 1)

③ 기타 학생들의 학내활동에 관한 세부사항들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04. 3. 1)

제38조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사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38조의 2 (안전사고의 예방) ① 학생회 및 대학본부 등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내외 학생 단체행사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 분임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 등 사전점검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행사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안전교육 시 인권침해 (신체

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생 단체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인권침해 세부기준 및 사고발생시 처벌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8.29]

제39조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처벌) 본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 9 장 규율과 상벌

제41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서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2조 (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8.31)

제43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 (징계)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1)

1. 본 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4. 3. 1)

2. (삭제 2002. 3. 1)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 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1)

③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2. 3. 1)

제44조의 2 (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3. 1]

제 10 장 등록금 (개정 2011. 2.24)

제45조 (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등 소정의 등록금(이하 “등록금” 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인 신청에 의해 등록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 분할 납부중인 학생이 휴학 및 자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완납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5)

② 실험실습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③ 납입한 등록금 중 법령에 의하거나, 입학포기 및 자퇴의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 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시로 이월하며, 등록금이 휴학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입학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④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⑤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발급 문제로 인한 반환(학기개시 30일까지)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환불한다. 단, 외국계좌 송금을 위한 수수료 및 환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9. 3. 1)

[전문개정 2011. 2.24]

제45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2.24]

제46조 (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2.24]

제 11 장 장 학 금

제47조 (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

1.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개정 2014. 6.16)

2.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개정 2014. 6.16)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 6.16)

제 12 장 교수회 및 위원회

제48조 (구성)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7.22)

제49조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의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08. 9. 1)
2. (삭제 2015. 2.24)
3. (삭제 2015. 2.24)
4. 학생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9조의 2 (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교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3. 1]

제49조의 3 (각종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 등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 3. 1)

② 각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2. 3. 1)

제 13 장 직 제

제50조 (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는 총장, 부총장,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원, 특임교원, 강사와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09. 2.26, 2019. 3. 1, 2020. 3. 1, 2020. 8.31)

② 기타 필요시 임시교직원을 둘 수 있다.

제51조 (직제) ① 본 대학교에는 산학취업처,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외에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21. 8. 1)

② 사무국장은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그 외의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총장 직속기구로 혁신지원단, 창업지원단, LINC3.0사업단, 신산업특화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6.11.22., 2018. 2.28, 2020. 3. 1, 2022. 3. 1, 2022. 5. 1)

④ 직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 1]

제 14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52조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정보지원센터 (개정 2021. 3. 2)
2. (삭제 2021. 3. 2)
3. (삭제 2009. 8.24)
4. (삭제 2008. 3. 1)
5. (삭제 2008. 3. 1)
6. (삭제 2014. 1. 1)
7. (삭제 2021. 8. 1)
8. 예비군대대 (신설 2008. 3. 1)
9. (삭제 2014.11. 1)
10. (삭제 2014.11. 1)
11. (삭제 2014.11. 1)
12. 연구지원센터 (신설 2022. 5. 1)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③ 정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6조(설치·운영),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수립), 제11조(사서 등), 제12조(시설 및 도서관 자료)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 2.24, 개정 2021. 3. 2)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 조직,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2)
2.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3. 사서 및 전문직원 배치기준과 교육훈련시간
4. 시설 및 도서관 자료

제52조의 2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삭제 2013. 2.27)
2. (삭제 2014.11. 1)
3. (삭제 2013. 2.27)
4. 평생교육원
5. 어학교육원
6. (삭제 2009. 8.24)
7. (삭제 2020. 8.31)
8. (삭제 2019. 3. 1)
9. (삭제 2019. 3. 1)
10. (삭제 2019. 3. 1)
11. (삭제 2019. 7. 1)

②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2조의 3 (학교기업 설치) ① 동서울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0., 2020. 8.31)

② 학교기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2. 7.22, 2020. 8.31)

③ (삭제 2020. 8.31)

④ 기타 학교기업의 조직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9. 1]

제52조의 4 (삭제 2020. 8.31)

제52조의 5 (삭제 2020. 8.31)

제 15 장 보 칙

제53조 (시행규칙) 이 학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과)장 회의 의견수렴 및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 2018.12. 5, 2019. 3. 1)

제54조 (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를 산업체로부터 위탁교육을 의뢰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지원 자격 및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 3. 1)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산업체위탁생의 수업년한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 3. 1)

제54조의 2 (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8.24]

제54조의 3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①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재학에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8.22]

제 16 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55조 (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 학생대표 및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3. 1, 전문개정 2018. 2.28]

제56조 (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2.26)

제5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3. 1]

제58조 (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9. 1, 2018.12. 5)

제59조 (공고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개정 2012. 7.22, 2018.12. 5)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대유공업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1983학년도까지로 한다.
3.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 및 제24조 제5항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 감축학과와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와 졸업정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학 과	졸업정원	적 용 학 년 도		비 고
		부 터	까 지	
기 계 과	360	-	1986	
	280	-	1987	
	240	1988	1989	
기 계 설 계 과	160	1986	1987	
전 기 과	200	1986	1989	
전 자 과	280	-	1986	
	240	-	1987	
	200	1988	1989	
통 신 과	200	1986	1987	
	160	1988	1989	
공 예 과	120	1986	1987	
공 업 디 자 인 과	120	1986	1987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이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자 중 1988학년도 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의 1, 제16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입학 시기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4항에 의거 허가를 받아 재입학 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 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개편에 따른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은 시행 당시 공예과, 공업디자인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제24조 6항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유공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서울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금형설계과, 공업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기계과, 기계설계과, 컴퓨터응용금형설계과, 사무자동화과, 전자과, 전자통신과, 건축과, 광고디자인과, 전자계산기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부 및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보통신과, 전자계산과, 건축과, 컴퓨터시스템과의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는 학생은 3년제로 입학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생의 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복학할 때에는 2년제로 복학하여야 하며, 다만 학생이 3년제로 복학을 원할 경우 허가할 수도 있다.

3.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전기과,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3학년도부터는 개편된 전기정보제어과, 컴퓨터시스템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4.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1학년도 기계공학부에 입학하여 기계전공, 자동화기계전공, 시계공학전공으로 전공 분류된 학생 중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전공으로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3학년도부터는 컴퓨터응용기계전공, 자동화시스템전공, 시계·정밀기계전공으로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 5, 제23조의 6, 제23조의 7은 2003

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경영과, 관광정보처리과, 전자계산과, 공예디자인과, 의상디자인과 학생 중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4학년도부터는 개편된 테크노경영학부, 관광정보처리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과, 크래프트코디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2학년도 기계공학부에 입학하여 시계·정밀기계설계전공으로 전공 분류된 학생 중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전공으로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4학년도부터는 시계·정보기계설계전공으로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부(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전 학부(과)에 2003학년도 입학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5학년도부터는 개정 후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기계공학부 - 컴퓨터응용기계전공 - 컴퓨터응용설계전공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 기계시스템디자인전공	
기계공학부 - 컴퓨터응용금형설계전공 - 자동화시스템전공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 로봇·금형디자인전공	
기계공학부 - 시계·정보기계설계전공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 시계·정보기계디자인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여행·항공정보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항공·여행정보전공	
디지털전자과	디지털정보전자과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45조 ③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학부 전공에서 학과로의 개편과 학과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06년 8월까지(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된 학과는 2007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 시계·정보기계디자인전공	- 시계주얼리과	
관광정보처리학부 - 외식조리정보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호텔외식조리정보전공	
컴퓨터시스템과	디지털방송미디어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	
모 텔 과	방송연예과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에서 학부 전공으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07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 크래프트코디디자인과 - 산업디자인과 - 광고디자인과	디자인학부 - 공예디자인전공 - 산업디자인 전공 - 광고디자인전공	
- 레저스포츠과	스포츠경호학부 - 레저스포츠전공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실내디자인과, 방송연예과의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는 학생은 3년제로 재입학하여야 한다.
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복학할 때에는 2년제로 복학하여야 하며, 다만 학생이 3년제로 복학을 원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
3. [학부의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09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 로봇·금형디자인전공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 로봇자동화전공	
테크노경영학부 - 부동산관리정보전공	테크노경영학부 - 부동산개발전공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 조항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전기정보제어과, 디지털정보전자과의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는 학생은 3년제로 재입학하여야 한다.
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복학할 때에는 2년제로 복학하여야 하며, 다만 학생이 3년제로 복학을 원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
3. [학부명칭, 학부의 전공명칭,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변경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0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테크노경영학부 - 산업경영정보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산업경영전공	
테크노경영학부 - 회계정보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회계전공	
테크노경영학부 - 마케팅정보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마케팅전공	
테크노경영학부 - 부동산개발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부동산개발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호텔경영정보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호텔경영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항공·여행정보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항공여행서비스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호텔외식조리정보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호텔외식조리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관광·실용중국어전공	중국비즈니스과	

나. 변경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1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11. 8.22)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방송연예과	공연예술학부 - 연기전공 - 실용무용전공 - 실용음악전공	(전공 택1)

4. 본 학칙 조항 중 (제8조 ②항, 제10조 ①항 ②항, 제14조의 2 ②항, 제14조의 3 ②항, 제14조의 4 ②항 ③항, 제15조, 제16조의 2 ①항, 제17조 ①항 ④항, 제19조 ①항 ③항, 제19조의 2, 제20조, 제21조, 제22조 ①항 ②항 ⑤항 ⑥항, 제22조의 2 ③항, 제22조의 3, 제23조 ④항 ⑤항, 제23조의 3 ⑤항, 제23조의 4 ④항, 제23조의 6 ①항 ③항, 제23조의 8 ①항 ②항, 제24조 ①항 ③항 ⑤항, 제25조 ①항 ②항 ③항, 제25조의 2 ③항, 제25조의 3 ①항, 제26조 ①항 ②항, 제27조의 2 ②항, 제30조, 제31조 ④항, 제35조, 제37조 ①항,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③항, 제44조의 2, 제46조, 제47조 ①항, 제49조 ①항 ②항, 제49조의 2 ①항 ②항, 제49조의 3 ①항 ②항, 제51조 ④항, 제53조, 제54조 ③항 ④항, 제59조)의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명칭, 학부의 전공명칭,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1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 기계시스템디자인전공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 항공기계시스템전공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 로봇자동화전공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 기계자동차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회계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세무회계전공	
디자인학부 - 광고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 게임디자인전공	
스포츠경호학부 - 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학부 - 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경호학부 - 경호안전전공	스포츠학부 - 경호스포츠전공	

나.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2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디지털정보전자과	디지털전자과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학부 전공의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2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디자인학부 - 공예디자인전공	공예디자인과	
디자인학부 - 산업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과	
디자인학부 - 시각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과	
디자인학부 - 게임디자인전공	게임콘텐츠과	

3. (야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재적중인 자가 야간의 폐지로 인하여 소속 학부(과)의 야간으로 복학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부(과)의 주간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2월 26일 시행 학칙의 부칙 중 개정사항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동서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서울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본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4조, 제22조 ②항, 제23조의6 ①항, 제23조의6 ③항, 제31조 ④항, 제33조 ②항, 제44조 ①항 1호의 ‘본 대학’ 을 ‘본 대학교’ 로 한다.
나. 제1조, 제3조, 제4조의2의 ‘본 대학은’ 을 ‘본 대학교는’ 으로 한다.

- 다. 제5조 ①항, 제27조의2 ①항, 제33조 ①항, 제36조 ③항, 제44조의2, 제49조의2 ①항, 제49조의3 ①항, 제57조 ①항의 ‘본 대학의’ 를 ‘본 대학교의’ 로 한다.
- 라. 제17조 ①항, 제23조 ②항, 제33조 ①항, 제48조의 ‘본 대학에’ 를 ‘본 대학교에’ 로 한다.
- 마. 제23조 ①항, 제50조 ①항, 제51조 ①항, 제52조 ①항, 제52조의2 ①항의 ‘본 대학에는’ 을 ‘본 대학교에는’ 으로 한다.
- 바. 제23조 ④항, 제23조의5 ①항, 제23조의6 ①항3호, 제23조의6 ②항, 제27조의3 ①항의 ‘본 대학에서’ 를 ‘본 대학교에서’ 로 한다.
- 사. 제23조의2 ①항, 제23조의3 ①항, 제23조의4 ①항의 ‘본 대학에서는’ 을 ‘본 대학교에서는’ 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3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산업경영전공	테크노경영학부 - 산업경영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세무회계전공	테크노경영학부 - 세무회계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마케팅전공	테크노경영학부 - 마케팅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부동산개발전공	테크노경영학부 - 부동산개발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호텔경영전공	관광정보학부 - 호텔경영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항공여행서비스전공	관광정보학부 - 항공여행서비스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 호텔외식조리전공	관광정보학부 - 호텔외식조리전공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과) 개편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4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 항공기계시스템전공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 항공기계과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 기계자동차전공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 기계자동차과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산업경영전공	경영학부 - 테크노경영과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세무회계전공	경영학부 - 세무회계과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마케팅전공	경영학부 - 마케팅과	
테크노경영정보학부 - 부동산개발전공	경영학부 - 부동산과	
관광정보처리학부 - 호텔경영전공	관광학부 - 호텔관광경영과	
관광정보처리학부 - 호텔외식조리전공	관광학부 - 호텔외식조리과	
관광정보처리학부 - 항공여행서비스전공	항공서비스과	
스포츠학부 - 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학부 - 레저스포츠과	
스포츠학부 - 경호스포츠전공	스포츠학부 - 경호스포츠과	
공예디자인과	실용미술과	

나.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5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디지털방송미디어과	방송미디어과	
공연예술학부 - 연기전공 - 실용무용전공	연기예술과	
공연예술학부 - 실용음악전공	실용음악과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1조(직제) 및 제52조(부속기관)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 조항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2조(부속기관)의 개정사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과) 개편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6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관광학부 - 호텔관광경영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관광학부 -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스포츠학부 - 레저스포츠과	스포츠학부 - 레저스포츠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시계주얼리과	시계주얼리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 나.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7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방송미디어과	디지털방송미디어과	

3. (야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재적중인 자가 야간의 폐지로 인하여 소속 학부(과)의 야간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부(과)의 주간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제4조(설치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전문학사 학위과정), 제4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제5조(수업연한)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제19조(휴학)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4. [학부(과) 개편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8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융합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호텔외식조리과	외식조리테크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실용미술과 시각디자인과	비주얼콘텐츠디자인과 (학과통합)	전문학사 학위과정

- 나.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9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전기정보제어과	전기정보제어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건축과	건축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정보과 - 정보보안전공 - 스마트정보전공	전문학사 학위과정
디지털방송미디어과	디지털방송콘텐츠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연기예술과 실용음악과	공연예술과 (학과통합)	전문학사 학위과정

- 다.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8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융합학과	학사학위과정

- 라. (컴퓨터정보과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당시의 학제를 따르며, 복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제를 선택할 수 있다.

마. 야간의 폐지로 인하여 소속 학부(과)의 야간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부(과)의 주간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2조(교육과정), 제24조(교과이수단위), 제26조(평가시험), 제27조(성적), 제27조의2(학점 인정)에 의한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 및 성적평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제4조(설치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전문학사 학위과정), 제4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제5조(수업연한)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학부(과) 개편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9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동산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나.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0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디지털전자과	전자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 ICT융합전공 - 네트워크통신보안전공	전문학사 학위과정
공연예술과	연기예술실용음악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다.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9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동산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사학위과정

라. 야간의 폐지로 인하여 소속 학부(과)의 야간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부(과)의 주간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1조(직제)의 개정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제4조(설치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전문학사 학위과정), 제4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제5조(수업연한)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졸업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및 수강신청은 2019학년도 신입생(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개정 전 입학생 및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제적 후 재입학할 경우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4.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 조치) 개정 학칙 시행 전에 실시된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는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5. [학부(과) 개편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0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기계자동차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외식조리테크과	호텔외식학부 호텔외식조리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외식학부 호텔관광경영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실버복지과	사회복지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비주얼콘텐츠디자인과	시각디자인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나.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1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실내디자인과	실내디자인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다.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9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학사학위과정

라.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0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비주얼콘텐츠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학사학위과정

마. 야간의 폐지로 인하여 소속 학부(과)의 야간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부(과)의 주간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및 수강신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재입학생, 편입학생, 복학생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학년도 수강신청 교육과정표 기준으로 졸업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4조(설치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전문학사 학위과정), 제4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제5조(수업연한)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제50조(교직원) 학칙 개정일 전에 강사로 임용된 교원은 개정된 강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4. [학부(과) 개편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1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나.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2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네트워크통신보안전공	ICT보안전공	전문학사 학위과정
연기예술실용음악과	연기예술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연기예술실용음악과	실용음악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다.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1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학과	학사학위과정

라. [모집단위 분리(연기예술과, 실용음악과)로 인한 경과조치] 복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마. (아동보육과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당시의 학제를 따르며, 복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제를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설치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전문학사 학위과정) 및 제5조(수업연한)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학부(과) 개편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3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디지털방송콘텐츠과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연기예술과	연기예술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실용음악과	실용음악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설치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전문학사 학위과정) 및 제5조(수업연한)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학부(과) 개편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3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 항공기계과	항공기계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디자인융합학과	산업디자인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시계주얼리학과	럭셔리위치주얼리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호텔외식학부 -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 호텔외식조리전공	전문학사 학위과정
호텔외식학부 -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항공서비스과	항공서비스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융합콘텐츠크리에이터과	콘텐츠크리에이터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스포츠학부 - 레저스포츠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스포츠학부 - 경호스포츠과	경호스포츠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전공 -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전문학사 학위과정

나.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4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정보통신과 - ICT융합전공 - ICT보안전공	정보통신과 (모집단위 통합)	전문학사 학위과정
컴퓨터정보과 - 정보보안전공 - 스마트정보전공	컴퓨터정보보안과 (모집단위 통합)	전문학사 학위과정
뉴미디어예술학부 - 연기예술학과	연기예술학과 - 연극전공 - 뮤지컬전공 - 방송연예전공	전문학사 학위과정
뉴미디어예술학부 -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제5조(수업연한)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학부(과) 개편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3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시계주얼리학과	럭셔리위치주얼리학과	학사학위과정
디자인융합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학사학위과정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설치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전문학사 학위과정) 및 제5조(수업연한)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학부(과) 개편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4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기계자동차공학과	미래자동차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경영학부 - 세무회계과 - 마케팅과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세무회계과 마케팅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나.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4년 2월까지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학과로 전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경영학부 - 테크노경영과	폐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다. 개정 전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25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개정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전기정보제어학과	전기공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정보통신과	컴퓨터통신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컴퓨터정보보안과	컴퓨터정보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라. (사회복지학과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당시의 학제를 따르며, 복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업연한을 선택할 수 있다.

【별지 1】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
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
여함.

년 월 일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학위등록번호 : 동서울-연도-일련번호

【별지 2】 (개정 2013. 2.27)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학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과 학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별지 3】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교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학위등록번호 : 동서울-연도-일련번호

【별지 4】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공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학칙제 23조의 5 규정에 의하여 ()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학위등록번호 : 동서울-연도-일련번호

【별지 5】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학위등록번호 : 동서울-연도-(학)○○○○(일련번호)

【별표 1】(개정 2014. 6.16, 2015. 2.24, 2016. 2.24, 2016. 6.20, 2017. 2.28, 2017. 8.28, 2018. 2.28, 2018.12. 5, 2020. 3. 1, 2020. 8.31, 2021. 3. 2, 2022. 3. 1, 2022. 5. 1)

학부(과)별 전문학사학위 수여표

학 부 (과) 명	전문학사 학위명
	일반과정
항공기계과 미래자동차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통신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건축학과 컴퓨터정보과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공업전문학사
게임콘텐츠과	공업전문학사
호텔외식조리과 - 호텔외식조리전공 - 카페베이커리전공	외식조리전문학사
럭셔리위치주얼리학과	공업전문학사
자유전공학과	-
세무회계과 마케팅과 중국비즈니스과	경영전문학사
콘텐츠크리에이터과	콘텐츠크리에이터 전문학사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동산전문학사
호텔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관광전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전공 - 시각영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메타버스게임디자인과	디자인전문학사
아동보육과	교육전문학사
뷰티코디네이션과 보건의료행정과	보건전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문학사
레저스포츠학과 경호스포츠과	체육전문학사
연기예술학과 - 연극전공 - 뮤지컬전공 - 방송연예전공 실용음악학과 엔터테인먼트경영과 K-POP과 무대미술과	예술전문학사

※ 자유전공학과의 경우, 전공배정에 따라 학위명을 별도로 정함

【별표 2】(개정 2014. 6.16, 2015. 2.24, 2016. 2.24, 2016. 6.20, 2017. 2.28, 2017. 8.28, 2018. 2.28, 2018.12. 5, 2020. 3. 1, 2021. 3. 2, 2022. 3. 1, 2022. 5. 1)

학과별 학사학위 수여표

학과명	학사 학위명
	일반과정
기계자동차공학과	공학사
전기정보제어학과	공학사
전자공학과	공학사
ICT융합학과	공학사
ICT보안학과	공학사
건축학과	공학사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공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공학사
실내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럭셔리위치주얼리학과	공학사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동산학사
호텔관광외식학과	호텔관광외식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항공서비스학과	관광경영학사
레저스포츠학과	체육학사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패션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연기예술학과	연극학사
실용음악학과	예술학사

【별표 3】(신설 2021. 3. 2)

계약학과 학위수여표

학과명	계약학과 학위명
AI응용소프트웨어과	공업전문학사